

목포시시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4월 7일 목포시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4월 13일
- 다. 상정일자 : 2001년 4월 14일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본 회 의(제1차) : 총무국장 정 은 면
- 총무사회위원회 : 세무과장 임 영 진

나. 제안이유

- 2000. 12.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새롭게 포함될 조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과, 벤처기업의 육성촉진지구내 사업용 재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등에 대한 감면과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면제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

다. 주요골자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조 내지 제6조)
 - 국가유공자, 유족 및 단체의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 장애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에 자동차세면제.
 - 장애인(1급 내지 3급) 소유의 보철용, 생업활동용 차량에 자동차세 면제.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 경감.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내지 제9조)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 사립학교의 학생을 위한 실험, 실습용 항공기 및 선박에 재산세 면제.
 - 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인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 60평방미터 이하는 50% 경감.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을 받는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 5년간 경감.
 - 지방세법에 따른 마을회, 주민공동체의 농작물 소득에 농업소득세 면제, 공동작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5년간 적용.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50% 경감.

-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안 제16조 내지 제26조)
 -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50%,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면제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50%를 5년간 경감.
 -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출자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를 경감.
 -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 화물유통 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50%를 5년간 경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7년간 면제.

-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를 5년간 경감.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2002년까지 이전할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용 부동산에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 면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4. 위원회 활동

- 제9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2001. 4. 14)
 -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2001. 4. 16)
 -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

5. 토론요지

-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물과 각종 공공시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의 벤처기업용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이 승인되어 개정된 안인 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

6. 심사결과

【원 안 가 결】